

소 장

원 고 별지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8층·14층(서초동, 서희타워)

전화 : 02-3476-6002, 팩스 : 02-3476-6607

이메일 :

담당변호사 000, 000, 000

피 고 1.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성개발빌딩 17층(135-080)

대표자 도성환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창진동)

대표이사 벤자민홍

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남대문로1가, 신한은행광교빌딩)

대표이사 이성락

손해배상(기) 청구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각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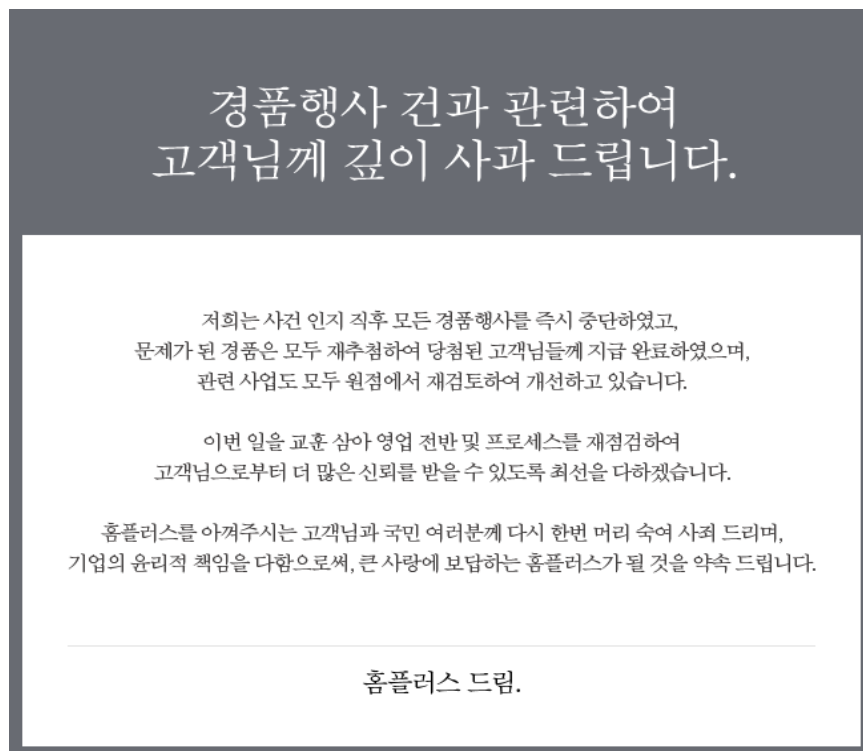
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전화번호 02-530-4285,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이하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 1. 30.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미동의 회원정보 판매로 약 231억원 챙긴 홈플러스(이하 ‘홈플러스’) 임직원 등 기소”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갑 제1호증 참조, 이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정부합동수사단은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홈플러스’라고만 합니다)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경품행사를 미끼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피고 라이나생명보험(이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이라고만 합니다)과 신한생명보험(이하 ‘피고 신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합니다) 등에 판매하고 231억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 회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가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인지, 침해된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다. 그런데 피고 홈플러스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이라고만 합니다)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어떤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라. 피고 홈플러스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경품행사를 중단하고, 관련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다’는 짝막한 공지문만 올리고 있을 뿐, 정작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고,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 피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아예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취득, 이용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 이처럼 피고들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원고들이 2015. 3.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참조). 그리고, 2015. 3. 9.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홈플러스에 대하여 개인정보열람신청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그러나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출을 포함한 조정절차 일체에 대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심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불성립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참조). 그리고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열람신청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열람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사. 그리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의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들

가. 피고 홈플러스 : 시장점유율 2위인 대형마트 업체

1) 피고 홈플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쇼핑기업인 Tesco가 출자한 네덜란드의 Tesco Holdings B.V.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Tesco Holdings B.V.의 모기업이라는 Tesco PLC 는 2013. 2.말 기준 매출규모가 115조 원에 이르는 대형소매유통업체로, 유럽전역과 아시아 등에 이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확보한 세계 3위의 글로벌 유통그룹이라고 합니다.

2) 한편, 피고 홈플러스는 우리나라 유통업 중 대형마트 업종의 시장점유율이 26.2%(2013년 기준)로 시장점유율 기준 2위의 업체입니다(1위는 이마트 29.4%, 3위는 롯데마트 16.2%, 출처 : 이마트 2014년 사업보고서).¹

3) 피고 홈플러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2014. 2. 28. 현재 납입자본금은 6,167억 원이며,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 총 106개의 대형마트인 하이퍼마켓과 소위 SSM이라고 불리는 492개의 익스프레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홈플러스의 영업실적은 2013. 3. ~ 2014. 2.까지의 연매출액이 7조3,254억여 원에 달하고, 매출총이익만 해도 2조4,653억 원, 당기순이익은 4,63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²

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과 피고 신한생명보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하면, 피고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의 제휴마케팅 차장은 피고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업을 위해 이를 불법 제공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원고들 : 피고들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1) 이 사건 소송의 원고들 중, ① 원고 1.부터 원고. 822까지는 피고 홈플러스의 웨밀리카드 회원들, ② 원고. 823부터 원고. 841 까지는 피고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응모자들이며 ③ 원고. 842부터 원고. 1074까지는 웨밀

¹ 소매유통업 매출액 2013년 기준 262.5조원 중 대형마트 매출은 45.1조원으로 17.2%를 점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약 7.3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² 홈플러스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14)

리카드 회원이자 경품행사에 응모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홈플러스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원정보가 피고 보험회사에 제공되었고, 피고 보험회사에 의하여 회원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었습니다.

2) 홈플러스 웨밀리카드는 구매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쇼핑 또는 상품권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포인트 카드입니다. 회원가입은 점포를 방문해서 가입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웨밀리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카드 등록을 하려면 홈플러스 패밀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 가입은 하나의 통합된 회원 ID와 비밀번호로 홈플러스 패밀리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피고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 테스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온라인마트,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온라인몰, 홈플러스 평생교육 스쿨, 홈플러스 웨밀리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홈플러스 플러스모바일, 홈플러스 올버바웃푸드 등 7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 홈플러스의 회원이라는 점은, 피고 홈플러스가 발급한 식별번호인 홈플러스 회원카드번호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3. 피고 홈플러스 회원인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의 요지

1)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피고 홈플러스는 2011. 12. ~ 2014. 8. 사이에 홈플러스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피고 보험회사

에게 불법 제공했는데, 피고 라이나생명보험에 약 765만건(고객특정 약 190만 건)을, 피고 신한생명보험에 약 929만 건(고객특정 약 253만 건)을 불법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홈플러스는 사후에 회원에게 연락을 하여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1건당 2,800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총 83억 5천만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2) 한편, 정부합동수사단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피고 보험회사 직원들의 경우, 피고 라이나생명보험의 직원은 2013. 2. ~ 2014. 8. 사이에 회원들의 개인정보 약 563만 건(약 184만 건 특정)을, 피고 신한생명보험의 직원은 2011. 12. ~ 2014. 8. 사이에 위 정보 약 611만 건(약 154만 건 특정)을 피고 홈플러스로부터 불법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³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³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3)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4)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동의를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5) 원고들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제2항에서도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불법행위 1 - 피고 홈페이지가 피고 보험회사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법행위입니다

1) 피고 홈페이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어떤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제공의 목적은 무엇이며, 제공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지를 알리고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런데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 홈페이지는 위와 같은 적법한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피고 보험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에서도 이때 제공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 어느 누구도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입니다.

라. 불법행위 2 - 피고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도 불법행위입니다

1)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홈페이지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열람, 이용하여 자신들이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만한 대상인지를 선별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주체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보험모집 영업의 목표물로 타게팅을 한 것입니다.

2)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영업 대상 선별행위는 최근 국제적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행위입니다. 프로파일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ICCDPA에서 두 차례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링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입니다.

3) 한편, 피고 홈페이지는 피고 보험회사가 이와 같이 불법적인 프로파일링 행위를 할 것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불법행위 3 - 피고 홈페이지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는 과정도 불법행위입니다

1)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 대상자를 선별하고, 소위 타게팅(targeting)을 한 후 선별한 회원들의 정보를 피고 홈페이지에 보내서, 사후적으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판매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홈페이지는 피고 보험회사가 선별한 보험판매 대상자들에게 보험판매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기 위해 콜센터 업체에게 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업체는 넘겨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판매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전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2) 첫째, 피고 보험회사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보험판매 영업 적격자 여부 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 홈페이지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피고 보험회사가 개인별로 판단한 보험판매 영업 적격자 여부의 정보는 추가적인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성하고, 피고 홈페이지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입니다.

3) 둘째, 피고 홈페이지가 콜센터를 통해서 피고 보험회사가 선별한 보험판매 영업 적격자들에게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원고들에게 휴대전화로 동의 권유를 한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허락을 받기 위한 시도는 피고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선별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인데, 피고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그와 같은 불법적 과정을 숨기고 동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설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는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홈페이지가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판매 영업 허락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나) 피고 홈페이지가 회원들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할 때는 수집 목적으로 ‘회원 인증을 위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했습니다. 원고 중의 어느 누구도 회원

가입을 할 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피고 홈플러스 또는 콜센터가 보험판매 영업을 허락받기 위해서 전화를 할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 홈플러스가 휴대전화번호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미리 알렸다면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 홈플러스가 이런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려는 것이었다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렸어야 합니다.

피고 홈플러스가 보험판매 영업을 허락 받기 위하여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로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권유를 한 것은 애초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입니다.

다) 그러므로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의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입니다. 피고 홈플러스가 콜센터에 보험판매 영업 적격 대상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 콜센터 직원이 보험판매 영업 적격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판매 영업을 동의해 달라고 전화를 한 행위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바. 설사 콜센터에서 원고들에게 보험판매 영업 허락을 얻었어도 그 허락은 부적법합니다

1) 콜센터에서 받은 동의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동의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 설사 형식적인 동의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콜센터의 동의 권유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고가 보험판매 영업을 대하여 허락을 했더라도 적법한 허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 불법행위 4 –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판매 영업행위도 불법행위입니다

1) 피고 홈플러스와 콜센터가 보험판매 영업허락을 받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원고들에게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영업을 한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2) 원고들은 회원에 가입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판매 영업에 사용될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휴대전화번호로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판매 영업을 허락 해달라는 전화가 걸려 오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동의도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서 보험판매 영업 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3) 이런 과정을 숨긴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험판매 영업행위도 불법행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4. 경품응모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

1)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 홈플러스의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12.~2014. 7.경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에서 행사목적이 개인정보 유상판매임에도 고객사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 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하여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 원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이와 같이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7개 보험사는 보험판매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나. 불법행위 1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에 판매함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2) 그런데 피고 홈플러스는 응모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숨기고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응모고객 약200명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정확한 목적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3) 게다가 어수선한 행사장 분위기 속에서 아래와 같이 응모권 주요내용의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하여 사실상 가독(可讀)할 수 없게 해놓았고, 응모권에서 수집한 정보도 경품배송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일부라도 미기재시 경품추첨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을 사전에 전부 다 준비한 것은 아니고, 설령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경품 대신에 홈페이지 상품권 등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 불법행위 2- 보험회사로부터의 불법적인 보험판매 권유행위

1) 피고 홈페이지가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응모자들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불법적인 보험판매 권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2) 특히 보험업법 제99조는 보험모집에 관련하여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홈페이지는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소정의 금원을 받았습니다.

5. 그 외의 불법행위

가. 개인정보유출통지를 하지 않음

1)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⁴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⁵은 개인정보 유출

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⁵ 제27조의3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통지제도를 두고 있는데, 피고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주체들에게 유출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 언제를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누출된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행령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해하는 ‘유출’ 또는 ‘누출’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유출은 ‘1.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 2.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고, 누출에 대해서는 ‘비밀이나 정보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감’이라고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출은 2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즉,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조직 밖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 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직의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유출에 해당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용어사용의 예를 살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 나누고 있고,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한 규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은 ‘분실, 도난, 변조, 훼손’을 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유출’보다 협의의 ‘유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협의의 ‘유출’에는 분실, 도난, 변조, 훼손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가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제공은 협의의 ‘유출’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개인정보 유출(누출)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어떤 통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입니다.

나. 개인정보의 열람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음

1)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41조). 그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열람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항, 제4항).

3) 그런데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함

1) 원고들 중 일부는 2015. 3. 9.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홈플러스에 개인정보열람신청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2) 그러나 피고 홈플러스는 2015. 3. 23. 위 신청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언제 폐기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는 개인정보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피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열람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2015. 3. 27. 추가열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5호증 참조) 피고 홈플러스는 확인 작업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참조).

6. 결론

이와 같이 피고 홈플러스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인 피고 보험회사도, 담당 직원들이 실정법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위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는 상법 제389조 및 제210조,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 보도자료(2015. 1. 30.) |
| 1. 갑 제2호증 | 개인정보집단분쟁신청서 |
| 1. 갑 제3호증 | 개인정보열람요구서 |
| 1. 갑 제4호증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회신 |
| 1. 갑 제5호증 | 개인정보 추가 열람 청구서 |
| 1. 갑 제6호증 | 추가자료 청구에 대한 회신 |
| 1. 갑 제7호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사건 조정불성립 알림 |

첨부서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4통 |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통 |
| 1. 납부서 | 1통 |
|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각 1통 |

2015. 6. 30.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